



보도 일시	2022. 8. 29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8. 26. (금)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 변제호 (02-2100-2830)
		담당자	서기관 송현지 (02-2100-2832)

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(새출발기금)이 시행됩니다.

◇ 코로나 대응,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'새출발기금'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(잠정)입니다.

※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(국정과제 I-①)

◇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○ **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.**

- (원금조정)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(부실차주, 연체 90일 이상)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~ 80%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. (부실차주의 신용·보증채무)

○ **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.**

- (실질심사)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, 채무조정시 소득·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.

○ **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.**

- (상환기간 연장) 최대 10년(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)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되며, (부실·부실우려 차주 신용·담보·보증채무)

- (**상환유예**) 차주신청에 따라 **최대 1년간**(부동산담보대출은 3년)은 분할 상환금 납부를 유예(‘거치’)할 수 있고,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○ **고금리 대출은 중·저금리로 조정합니다.**

- (**금리조정**)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**고금리 대출을 중·저금리로 조정**할 계획입니다.

(부실우려차주의 신용·담보·보증채무, 부실차주 담보채무)

◇ **'22.10월**(잠정)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.

○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

1 추진배경

□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**영업제한**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**불가항력적 피해**를 받았습니다.

○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에 빛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,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된 상황입니다.

※ **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**(‘19년말~’22.6말)

① 개인사업자 대출은 **997조원**까지 급증 (사업자대출 653조원 + 가계대출 343조원)

②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: **+303.9조원(+44%)**

③ **비은행권 대출**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: **+160.4조원(+71%)**

④ **다중채무자**(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)가 **4배 이상 증가** : 8만명→33만명

-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를 자영업자 대출의 5~8%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
 - 그간의 손실보전금, 정책자금지원,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등 코로나 대응조치가 계속되면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,
 - 코로나 재확산, 3高(高금리·高물가·高환율) 등 경제·금융환경이 악화 되는 경우, 잠재부실이 누적·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이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,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고금리,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 하고,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,
 -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
※ **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**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주여건별로 다양한 금융지원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.

* 125조원 + @의 민생안정대책(7.14. 보도자료) 참고

소상공인·자영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(41.2조원) ■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(8.5조원)
서민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(10조원)
가계차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·고정금리를 전환하고, 대출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‘안심전환 대출’ 지원(45조원)

2 채무조정 대상 차주

□ 새출발기금은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장기연체(90일 이상)에 빠졌거나,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

□ ①코로나 피해, ②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, ③취약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.

① (코로나피해)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,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

-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
- 다만,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② (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)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(법인사업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상 소상공인에 한함)

- 코로나 발생 이후('20.4.~) 폐업한 차주도 포함(추경 부대의견)

③ (취약차주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

	판단 기준(안)
부실차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
부실우려차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폐업자, 6개월 이상 휴업자 (폐업 및 휴업신고자) ■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차주(8.29.현재)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(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)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■ 국세·지방세·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■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*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</p>

④ (지원제외)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,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

-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, 채무조정 신청시 **질적 심사를 실시**할 계획
-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,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

□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'**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**(10월 중 오픈예정)'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○ 국세청·행안부·중기부 등 관계부처,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 다만,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(예: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)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 채무조정 대상 대출

□ 새출발기금은 '새출발기금 협약*'에 가입한 **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(사업자가계/담보·보증·신용 무관)**을 대상으로 합니다.

* 약 6,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 목표

○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·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,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.

- 자영업자·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(13%)이 낮고, 담보(75%), 보증부대출(12%)이 많은 만큼 담보·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.
-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,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.

*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,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

□ 다만,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- ① 부동산임대·매매업 관련 대출,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전세보증대출 등
 - 다만,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, 화물차·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
- ② 할인어음, 무역금융, SPC 대출, 예금담보대출,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,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
- ③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·지방세·관세 등 세급채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
- ④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는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
 - *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% 초과시 지원불가
 -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

4 채무조정 신청횟수 및 한도

□ 새출발기금은 고의적·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**신청기간 중 1회**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다만,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□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, 무담보 5억원으로 **총 15억원**입니다.

-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
-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.2억원(통계청)인 점을 고려시,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5 채무조정내용 및 신용불이익

-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.

	보증부대출	신용대출	담보대출
부실차주	Track 1 (대위변제 후)	Track 1	Track 2
부실우려차주	Track 2	Track 2	Track 2

[Track 1] 부실차주가 보증·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

- 부실차주가 보증·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,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.
- (원금조정)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,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(순부채)의 **60~80%에 대해 원금조정**을 지원합니다.
- 순부채(부채-재산가액)에 대해 감면율 60~80%를 차등적용하는 만큼,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*~80%로 상이합니다.
- *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
-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가능기간,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
※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, 현행 채무조정 제도 대비 감면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입니다.

	총 부채 대비 감면율	평균 감면율
신용회복위원회	0~70% (취약계층 ~90%)	44% (상각채권은 61%)
새출발기금	0~80% (취약계층 ~90%)	-
법원개인회생	제한없음	60~70%

- (금리감면) **이자·연체이자는 감면**됩니다. (부채>재산의 경우)
- (분할상환) 기존 대출형태(일시상환/분할상환)와 무관하게 모두 **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**해야합니다.
- (상환기간)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.
 -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'**거치기간**'은 **최대 0~12개월간 지원되며, 분할상환기간은 1~10년간 지원**됩니다.

※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**은닉재산이 발견**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**무효처리**됩니다.

- (신용패널티)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, **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(공공정보)를 신용정보원에 등록**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(CB:Credit Bureau)에 공유합니다.
 -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, 카드 이용·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다만,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,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**신용회복기반**이 마련됩니다.

[Track 2] 부실우려차주가 담보·보증·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,
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

- 차주가 자신의 **영업회복**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, 낮은 금리,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합니다.
 - (원금조정) 원금조정은 **지원되지 않습니다.**

- (금리감면)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.
 - (연체 30일 이전)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, 9%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**9% 금리로 조정**됩니다.
 - *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및 금리부담 일부 완화에 초점
 - (연체 30일 이후)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, 상환기간 내에서 **단일 금리로 조정**됩니다.

※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,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나,

-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* 예 : (상환기간 3년 이하) 3% 후반, (3~5년) 4% 중반 (5년 이상) 4% 후반
상기 금리는 예시에 불과하여, '22.9월말 상황을 감안 추후 결정

- (분할상환) 기존 대출형태(일시상환/분할상환)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.
- (상환기간)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-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*은 **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~36개월), 분할상환기간은 1~10년(부동산담보대출은 1~20년)**까지 지원됩니다.
 - * 거치기간 동안은 기존 약정금리 부과
 - 거치기간 중 **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**합니다.
- (신용패널티)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,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**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**이 있을 수 있습니다. (부실차주의 경우 Track1과 신용패널티 동일)

6 채무조정 신청접수

- (접수채널)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**온라인 플랫폼** 또는 **오프라인 현장 창구**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[플랫폼]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(새출발기금.kr)
 [현장창구]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50개사),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(26개소)

- 또한, 9월 중 별도 **콜센터 출범 운영**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※ 온라인 플랫폼, 콜센터 출범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

- (시행)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, 금융권 협약체결(6,500여개), 전산시스템 구축(1~2개월 소요) 등 준비절차를 거쳐 **10월 중*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**합니다.

*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에정

- '22.10월부터 우선 **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**하되,

- 코로나 재확산 여부, 경기여건, 자영업자·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.

- (채무조정) 채무조정 신청시, 약 **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**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**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**됩니다.

-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.



* 「새출발기금」 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.

◆ **캠코 콜센터 1588-3570**

◆ **신복위 콜센터 1600-5500**

※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(별첨) 자영업자·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방안(상세)

※ 동 보도자료는 새출발기금의 기본적 개요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, 차주의 상황, 조정신청 대상 대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차주가 체감하는 신용패널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, 세부방안은 금융권·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청취 및 최종협의,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는 만큼, 조정 신청 전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	금융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송현지 (02-2100-2832)
담당 부서 <총괄>	중소벤처기업부	책임자	과 장	김주식 (044-204-7520)
	기업금융과	담당자	서기관	김승택 (044-204-7521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창운 (02-3145-8001)
		담당자	수석조사역	서기철 (02-3145-8300)
<공동>	한국자산관리공사	책임자	실 장	민은미 (051-794-3030)
		담당자	팀 장	명재성 (02-3420-5690)
<공동>	신용회복위원회	책임자	본부장	민영안 (02-750-1021)
		담당자	부 장	최윤화 (02-750-1071)
<공동>	서민금융진흥원	책임자	부 장	심재철 (02-2128-8015)
		담당자	팀 장	이석희 (02-2128-8022)
<공동>	신용보증기금	책임자	부 장	곽영남 (053-430-4411)
		담당자	팀 장	권오정 (053-430-4412)
<공동>	기술보증기금	책임자	부 장	박문수 (051-606-7480)
		담당자	부부장	엄대호 (051-606-7481)
<공동>	신용보증재단중앙회	책임자	부 장	하금두 (042-480-4285)
		담당자	차 장	권주희 (042-480-4286)
<공동>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책임자	실 장	윤수정 (042-363-7231)
		담당자	차 장	이재형 (042-363-7232)

<공동>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책임자	실 장 박미정 (055-751-9590)
		담당자	팀 장 김영재 (055-751-9601)
<공동>	한국신용정보원	책임자	부 장 조만식 (02-3705-5917)
		담당자	팀 장 이병철 (02-3705-5911)
<공동>	은행연합회	책임자	상 무 김평섭 (02-3705-5050)
		담당자	부 장 김경민 (02-3705-5704)
<공동>	저축은행중앙회	책임자	부 장 최승진 (02-397-8670)
		담당자	차 장 이윤조 (02-397-8672)
<공동>	농협중앙회	책임자	팀 장 송광민 (02-2080-3121)
		담당자	계 장 우한울 (02-2080-3126)
<공동>	수협중앙회	책임자	본부장 박현호 (02-2240-2200)
		담당자	팀 장 최영동 (02-2240-2210)
<공동>	신협중앙회	책임자	본부장 민경대 (042-720-1341)
		담당자	팀 장 홍석진 (042-720-1355)
<공동>	산림조합중앙회	책임자	부 장 조현철 (02-3434-7230)
		담당자	팀 장 정미경 (02-3434-7235)
<공동>	새마을금고중앙회	책임자	부 장 장석남 (02-2145-9650)
		담당자	차 장 김한국 (02-2145-9654)
<공동>	여신금융협회(카드)	책임자	본부장 배종균 (02-2011-0602)
		담당자	부 장 조윤서 (02-2011-0740)
	여신금융협회(금융)	책임자	본부장 이태운 (02-2011-0710)
		담당자	부 장 백승범 (02-2011-0619)
<공동>	생명보험협회	책임자	부 장 유제상 (02-2262-6624)
		담당자	팀 장 전선규 (02-2262-6530)
<공동>	손해보험협회	책임자	부 장 최종수 (02-3702-8571)
		담당자	팀 장 이은직 (02-3702-8572)
<공동>	한국대부금융협회	책임자	부 장 심용식 (02-6710-0810)
		담당자	과 장 최정열 (02-6710-0816)
<공동>	서울보증보험	책임자	부 장 박종선 (02-3671-7231)
		담당자	차 장 이세은 (02-3671-7245)